

항공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항공기상청 공고 제2024-3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항공기상청장

1. 최종합격자 명단

구분	인원	응시번호	성명
기간제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1명	002	김○○

*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2. 최종합격자 서류제출

○ 제출기한: 2024. 10. 4.(금)

○ 제출방법: 등기우편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1부

- 사진(3cmX4cm) 1매

- 이력서 [서식1]

- 공정채용 확인서 [서식2]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서식3]

※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채용의사가 없을 경우 채용 포기서[서식4] 작성 후 우편 제출

3. 유의사항

○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기타 문의는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032-740-2803)으로 연락

[서식1] 이력서

이 력 서

사진	성	한 글		주민등록번호		
	명	한 자		혈 액 형		
	주 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학 력	기 간		학 교 명(고교이상)		전공(학위)	
경 력	기 간 (연월일까지 기재)		근 무 처	직 위(급)	업 무 내 용	
자 격 및 면 허	취득년월일		자 격 · 면 허 명		시 행 처	
병 역	복 무 기 간		군 별	계 급	병 과	
					미필 또는 면제사유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계	성명	
	<i>배우자</i>			<i>자</i>		
	<i>부</i>			<i>자</i>		
	<i>모</i>			<i>자</i>		
<p>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 : 인</p>						

[서식2] 공정채용 확인서

[별지 제17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본인은 항공기상청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인)

항공기상청장 귀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항공기상청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항공기상청장 귀하

[서식4] 채용 포기서

[별지 제16호서식]

채용 포기서

채용명	2024년 항공기상청 기간제근로자 채용		
성명		응시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 본인은 () 사정으로 인하여
귀 기관에 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항공기상청장 귀하